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의록, 녹취록 규정 강화 및
임원의 겸직 금지 범위 확대〉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3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

Ⅲ. 검토의견

1. 회의록 공개 규정 구체화 및 녹취록 작성 의무화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를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하도록 그 절차를 구체화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생략) ④ 회의록은 <u>공개하여야</u>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하여야</u> -----.
<신설>	⑤ 이사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u>기간</u>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u>절차와 녹취록의 보관방법, 파기절차</u> · 방법 등에-----.
제74조(과태료) ① (생략)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현행	개정안
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 10. (생략) ③ ~ ⑤ (생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5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u> <u>3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10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u>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할 것을 규정¹⁾하고 있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공개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률에서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방법과 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같이 그 공개기간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할 것을 규정²⁾하고 있음.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³⁾하는바,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교원·직원·학생 등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와 같

2)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그 공개방법과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회 회의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아울러 이사회가 회의록 작성과 함께 녹취록도 작성하여 이를 10년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법인 서강학원 종합감사 결과, 서강학원 이사회는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종합감사 인지 후 허위로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짐. 녹취록을 의무화할 경우 이러한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방지하고, 검증도 신속하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및 녹취록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회의록 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이상을 고려했을 때, 이사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사회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임원의 겸직금지 범위 확대

개정안은 이사 및 감사가 학교법인이나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u>

현재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⁴⁾은 임원이 사립학교의 장, 교직원 등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하여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개정안의 겸직금지 조항은 학교법인과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물품 및 용역 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

4)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공공기관과 연관된 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⁵⁾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8

-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
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
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
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